

경운대학교 교원성과평가위원회규정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교원 성과의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「교원성과평가규정」 제7조 및 「비정년계열 교원성과평가규정」 제6조에 의거하여 경운대학교 교원성과평가위원회(이하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기능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조직) 위원회는 7인 이내로 구성하되 다음 각호에 의하여 임명한다.

1. 위원장과 위원은 경운대학교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.
2. 위원회에 간사를 둘 수 있으며, 간사는 교직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.

제3조(임기)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결원으로 인한 후임의 임기는 결원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.

제4조(회의) ① 위원회의 회의는 총장의 요청이 있을 때,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.

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.

③ 기획처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,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한다.

제5조(기능)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성과평가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 심의
2. 교원 성과평가 결과 심의
3.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심의
4. 기타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심의

제6조(위원회의 사무) 위원회의 사무는 기획처에서 관장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